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안 제75조의19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을 정함.

나.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 사목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개정)

신청내용 중 신청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하고, 신청내용 중 구분을 설계, 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제작·개조로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 ~ 12. 12.)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14 제1항 제2호 중 “검사성적서 등의”를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 및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75조의19를 제75조의20로 하고, 제7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량 또는 부품의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철도운행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74조에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상태·안전성 평가 등의 조사·측정·평가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종합검토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진단 등을 보고받은 즉시 법 제38조의6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소유자 등에게 운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정비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2. 법 제38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소유자등
3.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제2호의 소유자등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철도차량 소유

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차량정비 등을 명받은 소유자등은 해당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정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4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 자격부여
[]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앞 쪽)

- 7 -

부 칙

- 8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생략)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u>검사성적서</u> 등의 기술자료	2. ----- <u>검사성적서</u> , <u>허용오차</u> 등의 -----
3.~ 6. (생략)	3.~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u>신청인에게</u>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 ----- ----- ----- ----- <u>신청인 및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량 또는 부품의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철도운행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74조에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상태·안전성 평가 등의 조사·측정·평가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종합검토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진단 등을 보고받은 즉시 철도차량 소유자 등에게 운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정비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2. 법 제38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

단을 의뢰한 소유자등

3.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제2호의 소유자등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철도차량 소유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차량정비 등을 명받은 소유자등은 해당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정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의 지정 취소 등) (생략)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의 지정 취소 등) (현행 제75조의19와 같음)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 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령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3호	지정취소			

철도안전 전문인력 [] 자격부여 []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사 진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 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 반신 컬러사진) (3.5cm×4.5cm)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신청내용	구분	분야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궤도	철도운행 안전관리	구분	분야	철도차량
	설계						설계		
	감리						시험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시공						제작개조		
	신청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현 근무처	상호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부서			직위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 번호
기술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 번호		등록 연월일		발급 기관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상훈·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업무경력

일련 번호	근무기간	근무 연수	근무회사명	담당 업무 (직위)	참여사업명 (설비명, 발주자)	증명서류 유무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전문기술자 인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안전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1부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합니다)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에 한정합니다) 1부 5.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합니다) 1부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17,500원
------	---	--------------------

작성방법

- 신청내용 구분란은 본인의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신청등급란에 본인이 V표시를 합니다(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외합니다).
- 현 근무처란의 업종란에는 근무회사가 인가·허가를 받은 주 업종을 적습니다.
- 학력사항란에 최종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 기술자격란에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증 등을 모두 적습니다.
- 교육훈련란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3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 상훈·제재란은 본인이 철도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표창과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 발급신청란의 해당란에 본인이 V표시를 합니다.
- 업무경력란에 입사 및 퇴사(퇴직) 연월일과 직위·직급을 적고, 공직자는 근무회사명에 근무지를 세부 단위까지 적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으로 하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을 적고 날인합니다.

처리절차

